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4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26일

발 의 자: 박성연, 고광민, 김길영,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영희,
윤종복, 이은림, 이종태,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허 훈, 홍국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중앙정부와 각종 기관 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시장으로 하여금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시장으로 하여금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사업에 참여할 기관 등을 공개 모집·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 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4. 재정협의

- 가. 국비, 시비 등의 재원별 비율

- 나. 시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따로 담당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공모와 사업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시비 및 국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시비 및 국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